

유럽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최요섭*

차 례

- I. 서론
- II. 유럽연합조약 및 판례를 통한 회사법 통일의 노력
 - 1. 설립의 자유와 관련한 규정 일반
 - 2. 최초 설립 및 2차 설립의 자유보장
 - 3. 유럽주식회사규칙을 통한 회사법 통일의 의미
- III. 유럽회사법에 대한 평가
 - 1. 유럽주식회사규칙 일반
 - 2. 준거법 경쟁을 통한 유럽회사법의 발전
 - 3. 유럽회사법의 발전에 대한 전망:
최근 폐쇄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 IV. 결론

* 법학박사.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빙연구원 및 강사.

접수일자 : 2011. 10. 29 / 심사일자 : 2011. 11. 25 / 게재확정일자 : 2011. 12. 7

I. 서론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완전지역경제통합의 국제기구이며, 국제무대에서 그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은 미국에 견줄 만큼 매우 크다.¹⁾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인한 평화에 대한 갈망과 냉전상황에서 나타난 서유럽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협력이 유럽통합의 최초요인이었다.²⁾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된 리스본조약의 내용을 살펴 보면, 유럽연합은 이러한 통합의 목적을 더욱 확장하며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유럽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동시에 오래전부터 꿈꾸었던 유럽합중국 또는 연방(United States of Europe)을 향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³⁾ 따라서 리스본조약은 유럽연방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로 평가되고 있다.⁴⁾ 유럽연합이 1950년대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에서부터 현재의 리스본조약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법제의 통합이 큰 몫을 하였다.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분야에서 법적 통합에 대한 시도가 진행되어왔으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쟁법(competition law)과 같은 분야에서 역내시장(internal market)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입법과 판례를 통해 나타났다.⁵⁾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서, 유럽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 요인들로는 상이한 역사적 배경, 문화, 전통 그리고 언어에 있다. 비록 점진적으로 앞의 장애요인들이 사라지고 있으나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

1) 외교통상부 FTA 사이트 참조: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2) Norman Davies, "Europe: A History", Pimlico, London, 1997, pp.1057-1136.

3) Nigel Foster, "EU Law Directions", 2nd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0, pp.5~9.

4) 박덕영 외 14인 공저, 『EU법 강의』, 박영사, 2010, 27쪽.

5) 김은경, "EU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기업법연구, 제23권 제4호, 2009, 75쪽; Erik Werlauff, "Principles of European Company Law", European Company Law, Vol. 7, No. 5, 2010, pp.183-186. 경쟁법을 통한 역내시장 통합과 관련하여, [Alison Jones and Brenda Sufrin, "EU Competition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4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0, p.42] 참조.

이다.⁶⁾ 또한 회사법과 같은 특정 분야에는 유럽연합법이 통합의 목적에 비추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⁷⁾ 그러나 국제무역의 증가를 통한 세계화의 영향은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이에 따른 기업 환경 역시 상당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회사의 규모에 중점을 둔 유럽거대기업(European champions)의 설립은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였다.⁸⁾

따라서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기업환경에 맞는 경쟁력 있는 회사설립을 돕는 법제의 변화는 유럽통합에 있어서 하나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목적으로 유럽회사법에서의 설립, 지배구조, 해산, 청산 및 정리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학문적·실무적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유럽연합에서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회사법 또는 상법내 회사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개념의 회사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 의미에서만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⁹⁾

실질적 의미의 유럽연합 회사법의 법원(sources of law)은 유럽연합 조약(Treaties),¹⁰⁾ 규칙(Regulations), 지침(Directives),¹¹⁾ 그리고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일반원칙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회사법과 관련하여 판례와

- 6) Neill Nugent,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e European Union", 7th edn, Palgrave, MacMillan, New York, 2010, p.329.
- 7) 그러나 상이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유럽연합이라는 체계 안에서 합일점을 찾아나가고 있으며 설립준거법이 회원국 국내법이 아닌 유럽연합규칙(Regulation)을 입법한 것을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기도 한다[권영애, "유럽주식회사(SE, Societas Europaea)의 설립과 경영체계: EU령의 독일 주식법과의 접목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4권 제1호, 2010, 239쪽].
- 8) Jacques Pelkmans, "European Integration: Methods and Economic Analysis", 2nd edn, Prentice Hall, Essex, UK, 2001, p.273.
- 9) 유럽연합의 회사법이란 실정법과 같은 형태의 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학문적인 연구대상으로서 유럽연합의 회사법의 조정과 통일작업을 통하여 생성되는 새로운 분야의 회사법을 의미한다고 설명되고 있다[앞의 책, 박덕영 외 14인 공저, 395쪽].
- 10) 유럽연합조약은 유럽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과 유럽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으로 구성된다.
- 11) 지침은 형식과 방법(form and methods)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에게 재량이 있다는 점에서 규칙과 다르다. 관련하여, [TC Hartley, "The Foundations of European Union Law", 7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0, pp.105-106] 참조.

규칙 및 지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¹²⁾ 2009년 발효된 리스본조약으로 기존의 유럽공동체조약(Treaty of European Community: TEC)은 현재의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¹³⁾으로 개정되었다.

TFEU 제288조에 따른 규칙에 의한 통일적 형태의 유럽주식회사¹⁴⁾의 설립과 이와 관련된 지침¹⁵⁾에 의한 회원국 국내 회사법의 입법 및 조정이 각 회원국 회사법 사이에 어느 정도 조화와 통일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완성된 연합이 아닌 연방을 향하여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유럽연합에서의 회사법은 아직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¹⁶⁾

유럽에서 회사법 통일을 향한 노력은 급진적인 유럽통합을 낳은 리스본조약 이전부터 회사법과 관련한 규칙과 지침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럽연합 회사법의 범규범은 자체의 입법을 통해 ‘유럽회사(European company)’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회원국의 상이한 법체계로 인한 법적 그리고 실무적인 제한을 피하면서, 다른 회원국에서 합병, 지주회사 혹은 공동 자회사(joint subsidiary)의 설립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범체계는 유럽회사가 고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설정하였다.¹⁷⁾ 유럽주식회사(라틴어에 연원을 둔 Societas Europaea 혹은 SE: 공개유한책임회사)에 관련된 규칙¹⁸⁾은 2001년 입법되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개유한

12) 앞의 책, 박덕영 외 14인 공저, 398쪽. 2차 법원(secondary source of EU law)과 관련하여, [채형복, 「핵심 유럽연합(EU)법」,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1, 96쪽] 참조.

13) 혹은 “EU 운영조약”으로 번역하기도 한다[채형복, 「리스본 조약」,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0, 309쪽] 참조.

14)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OJ L 294/1.

15) Council Directive 2001/86/EC supplementing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with regards to the involvement of employees, OJ L 294.

16) 앞의 책, 박덕영 외 14인 공저, 395~396쪽.

17) EU 웹사이트 참조: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mployment_and_social_policy/social_dialogue/126016_en.htm.

18)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책임회사(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y)인 유럽주식회사와 더불어, 2008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폐쇄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인 Societas Privata Europaea(SPE)에 대한 입법도 최근에 추진하고 있다.¹⁹⁾

유럽회사법의 발전은 회사설립의 자유보장을 통하여 기업 친화적인 회사법을 낳았고, 이것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수가 증가하면서 회원국 법률간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 현상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통일된 모습의 회사법을 만드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각 회원국의 법률간 경쟁이 아니라, 유럽연합 회사법과 회원국의 회사법 사이의 경쟁이라 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발전과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업의 자본을 유인하기 위해서 친기업환경의 회사법제공과, 구체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기업지배구조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스스로 유럽주식회사규칙을 통해 최상의 지배구조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유럽회사법차원에서 유럽연합의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²⁰⁾

최근 유럽주식회사법을 근거로 설립된 회사의 수가 증가되면서 더 발전된 형태의 회사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회사법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 조약을 통한 설립의 자유와 이를 통한 각 회원국의 법률간 경쟁과 유럽주식회사규칙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현재 유럽주식회사규칙의 내용을 평가한다. 본 연구는 유럽통합에 있어서 회사법의 통일의 필요와 입법을 통한 유럽회사의 경쟁력 강화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유럽주식회사규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회사법 관련 지침보다는 판례와 규칙, 그리고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유럽연합 회사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OJ L 294/L.

19) 앞의 논문, 김은경, “EU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96쪽.

20) 임정숙, “유럽주식회사(SE)의 내부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독일이원구조SE의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5권 제1호, 2011, 43쪽.

II. 유럽연합조약 및 판례를 통한 회사법 통일의 노력

1. 설립의 자유와 관련한 규정 일반

유럽연합의 권한 및 회원국에 대한 유럽법의 우위(supremacy)는 조약에 의해 각 회원국으로부터 유럽연합에 위임(conferral)된 부분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유럽연합 회사법의 조화도 유럽조약 해당 조문을 근거로 해석해야만 한다. 유럽연합 TFEU 제1부 제4편(제45조~제66조)²¹⁾에서는 설립 목적에 따른 거래의 통합을 담고 있으며, 그 중 제4편 제2장(제49조~제55조)은 설립의 자유(right of establishment)를 보장하여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회원국 국내법의 철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²²⁾

유럽조약에서 설립자유에 대한 일반원칙은 TFEU 제49조에서 나타나고, 회사설립자유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 조약 제54조 제1문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유럽연합 역내시장에서 회사(companies), 기업(firms) 혹은 자연인(natural persons)의 설립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즉 TFEU 제54조는 유럽연합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등록 사무소(registered office), 본점(central administration), 또는 당해 사업자의 주된 사업소가 유럽연합 내에 있는 회사와 기업에 대하여 회원국의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유럽연합 역내시장에서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TFEU 제54조 제2문은 회사 또는 기업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민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와 기업을 말하며, 이때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협력단체(co-operative societies)와 사법 및 공법상의 기타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TFEU 제54조에서 기술하고 있는 회사와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²³⁾ 결론적으로, 자연인의 자영업과 회사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21) TFEU 제4편은 상품을 제외한 노동,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22) TFEU 제49조. 이와 관련하여, [앞의 책, 박덕영 외 14인 공저, 398~399쪽] 참조.

23) 위의 책, 박덕영 외 14인 공저, 398~399쪽.

TFEU 제49조는 비영리 회사를 포함하여 넓게 적용이 가능한 반면,²⁴⁾ 제 54조의 내용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²⁵⁾²⁶⁾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는 TFEU 제54조의 직접적인 결과(immediate consequence)로서, 위에서 기술한 회사가 대리점 혹은 자회사지점을 통해서 다른 회원국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권리를 갖는 것을 판례에서 확인하고 있다.²⁷⁾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동 조약 제54조가 유럽 역내시장 내에서 회사는 다른 회원국으로의 진출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Daily Mail 사건²⁸⁾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TFEU 제54조가 직접적으로 다른 회원국 시민 혹은 회사가 당해 회원국에서 차별없이 내국인과 똑같이 취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회사가 속한 회원국은 당해 회사가 다른 회원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²⁹⁾ 유럽사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유럽연합 조약이 개인 및 회사의 자유로운 회사의 설립을 보장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설립의 보장을 통한 노동, 서비스, 자본 이동의 자유는 유럽연합의 통합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4) TFEU 49조와 관련하여 최초 영업의 설립과 이차 영업의 설립의 자유에 관한 판례로 Klopp(Case C-107/83 [1984] ECR 2971) 참조.

25) Paul Craig and Grainne De Burca, "EU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5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1, p.780.

26) TFEU 제49조는 자영업 및 회사와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에서의 차별 없는 설립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Catherine Barnard, "The Substantive Law of the EU: The Four Freedoms", 3rd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0, p.295]. 이 때 TFEU 제49조에서의 설립에 대한 개념은 정해지지 않은 기간을 근거로 다른 회원국에서 일정한 설립을 통한 경제 활동을 실제로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Siofra O'Leary, "Free Movement of Persons and Services", in Paul Craig and Grainne De Burca (eds), The Evolution of EU Law, 2nd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1, p.529].

27) Case C-212/97 Centros [1999] ECR I-1459, para. 20.

28) Case 81/87 Daily Mail [1988] ECR 5483.

29) Alan Dashwood et al., "Wyatt and Dashwood's European Union Law", 6th edn, Hart Publishing, Oxford and Portland, OR, USA, 2011, pp.647-648.

2. 최초 설립 및 2차 설립의 자유보장

TFEU에서 보장하고 있는 설립의 자유는, 회사의 최초 설립(primary establishment)과 자회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포함하는데, 최초 설립 이후의 사항을 2차 설립(secondary establishment)이라고 한다. 자영업³⁰⁾ 및 회사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TFEU 제49조는 다른 회원국에서의 최초 회사설립과 지점 혹은 자회사의 형식으로서의 2차 회사설립을 구분하고 있다. 최초 회사설립의 경우 회원국의 국적과 관련된 내용의 성격을 담고 있으며, 2차 회사설립은 특정 회원국에 이미 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을 적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2차 설립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게 된다면, 특정 회원국 내에서 등록사무소만을 두고 있는 기업이 상이한 회사법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원국에서 설립에 의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 많은 수의 회원국은 회사의 업무를 관할하는 법으로 활동중심지(real seat)의 법을 기준으로 하므로, 관련 회사가 회원국 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본점이 유럽연합 밖에 있다면 그 법적 존재는 다른 회원국에서는 인식될 수 없다. 또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등록사무소를 이전하는 문제는 각 회원국 회사법 간의 차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법률적으로 영국,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과 같은 회원국에서 등록사무소의 이전은 회사의 청산을 가져오며, 회사가 다른 회원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³¹⁾

다만, 이러한 상이한 회사관련 규정으로 인한 문제는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Segers 사건³²⁾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특정 회원국에서 등록된 회사가 다른 회원국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운

30) 유럽연합 조약에서는 자영업(self-employed)에 대하여 특별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나 Jany 사건(Case C-268/99 Jany and others v. Staatssecretaris van Justitie [2001] ECR I-8615)에서 자신의 영업을 통해 사업의 실패와 성공의 모든 위험(risk)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례를 통해 정리되었다.

31) 앞의 책, 박덕영 외 14인 공저, 399~401쪽.

32) Case 79/85 Segers [1986] ECR 2375.

영하고 있을 경우, 다른 회원국에서 회사설립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판결함으로써 2차 회사설립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이후 Centros 사건³³⁾과 Cartesio 사건³⁴⁾ 등에서 이러한 설립의 자유가 다시 확인되었다.³⁵⁾ Centros 사건에서, 덴마크 국적의 사업자가 영국에서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통해 덴마크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당시 영국에서는 회사설립 자본금이 100파운드였으나 덴마크에서는 최저자본금 요건이 약 2만 파운드에 해당하였다. 당해 회사는 최초로 영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덴마크에서 지점을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덴마크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덴마크 유한회사 설립의 최저자본인 2만 파운드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영국에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Segers 판결을 참조하면서 특정 회원국에서 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에 회사를 설립한 사업자는 위에서 기술한 설립의 자유를 여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기업이 회사설립의 제한이 가장 적은 회원국을 선택함으로써 사업 활동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데 설립의 자유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는 이후 Inspire Art 사건에서도 확인되었으며,³⁶⁾ 위에서 기술한 Cartesio 판결에서는 비록 각 회원국은 최초 회사

33) Case C-212/97 Centros [1999] ECR I-1458.

34) Case C-210/06 Cartesio [2008] ECR I-9641. Catherine Barnard, *op. cit.*, pp.321-322; Gert-Jan Vossestein, “Cross-Border Transfer of Seat and Conversion of Companies under the EC Treaty Provisions on Freedom of Establishment: Some Considerations on the Court of Justice’s Cartesio Judgment”, *European Company Law*, Vol. 6, No. 3, 2009, pp.115-123.

35) 관련 판례법의 발전과 관련하여, [Wulf-Henning Roth, “From Centros to Ueberseering: Free Movement of Companies,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Community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52, 2003, pp.177-208; Carsten Gerner-Beuerle and Michael Schillig, “The Mysteries of Freedom of Establishment After Cartesio”,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 59, 2010, pp.303-323] 등을 참고할 것.

36) Case C-167/01 Inspire Art [2003] ECR I-10155. 위 사건에서 법원은 최저 설립자본과 이사의 책임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회원국(네덜란드)의 설립자유 제한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정당화 될 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 본 사건에서 회원국의 관련 규정이 불균형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최종 판결하였다[Paul Craig

의 설립과 다른 회원국에서의 2차 회사설립자유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국내법을 입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도, 최초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는 회원국의 기본적인 국내법의 입법에 대한 결정은(유럽연합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당해 회원국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³⁷⁾

이러한 유럽연합법을 통한 회사설립의 자유보장에 관한 법원의 입장은 극단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³⁸⁾ 실제로 위의 판례의 결과, 상당한 수의 폐쇄유한책임회사들이 영국으로 이주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회원국에서 민간회사를 위한 자본금 요건규정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³⁹⁾ 특히 Brecht의 최근 통계조사에 의하면, 위 판결이 다른 회원국 회사들의 영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밝혀졌다.⁴⁰⁾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6만7천개의 다른 회원국 출신 유한회사가 영국에서 설립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Centro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 영국에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가 영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서 특히 독일의 기업들이 이러한 설립의 자유를 통한 혜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echt는 그의 논문에서 설립의 비용과 최저자본금에서의 회원국의 차이가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보다 영국을 선호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통계의 증거는 결과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적은 비용의

and Grainne De Burca, op. cit., p.783].

37) Ibid., p.784.

38) 설립의 자유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공익의 문제로 정당화되는 경우, 그 목적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인 경우, 효과에서 반드시 제한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것을 흔히 Gebhard Formula라 불러진다[John Armour and Wolf-Georg Ringe, “European Company Law 1999-2010: Renaissance and Crisis”, Common Market Law Review, Vol. 48, 2011, p.136].

39) 유럽연합에서 각 회원국의 회사법 간 경쟁이 활발하며 그 중에서 영국 회사법의 영향이 크다 할 수 있다[노혁준, “유럽의 폐쇄회사 법제 논의: EU 법안과 영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9권 제4호, 2011, 171쪽].

40) M Brecht et al., “Where Do Firms Incorporate? Deregulation and the Cost of Entry”,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ECGI), Law Working Paper No. 70/2006 (2008) 14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See the following academic website: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906066.

회사법(low-cost corporate law)'을 제정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판례를 통한 회원국 간의 '규제의 경쟁(regulatory competition)'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최근에 유럽위원회(Commission)는 '유럽 폐쇄회사에 관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Private Company)'을 통해 최저 자본요건을 1유로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⁴¹⁾⁴²⁾ 이러한 법률제안에 대하여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1유로의 최저자본요건은 회사정관에서 회사임원이 회사가 다음 연도에 채무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지불능력증명서(solvency certificate)에 서명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만약 그러한 요건이 정관에 없을 시에는 최저 자본금은 8천유로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⁴³⁾ 따라서 유럽연합은 앞으로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입법을 통해 기업이 회사설립 준거법으로 회원국 회사법과 유럽연합 회사법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유럽주식회사규칙을 통한 회사법 통일의 의미

유럽연합은 단일시장(Single Market)의 완성을 통해 회원국 간 경계 혹은 무역의 장벽이 없는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⁴⁴⁾ 단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회원국 회사들의 합병을 통해 회원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유럽주식회사를 착안하게 되었다.⁴⁵⁾ 유럽연합의 단일시장이 점차 발전하면서 각 회원국 기업들은 다른 회원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되었으며,⁴⁶⁾ 또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TFEU 제54조

41) Alan Dashwood et al., op. cit., pp.652-654.

42) COM(2008) 396/3, 7.

43)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10 March 2009 on the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private company (COMP(2008)0396) [2010] OJ C87E/300, 311.

44) 유럽연합의 단일시장은 지역경제협력의 발전단계로 볼 때, 공동시장(Common Market)과 경제동맹(Economic Union)의 단계를 지나서 정치분야를 포괄하는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으로 진행하고 있다[김봉철, FTA-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한국기업법무협회, 2007, 16쪽].

45) 김은경, "EU에서 합병에 의한 유럽주식회사의 형성과 이해관계자의 보호", 기업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7, 202쪽.

와 제49조⁴⁷⁾는 회사설립에 있어서도 회원국 간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국내법 입법에 있어서 경쟁을 낳았다.⁴⁸⁾ 따라서 유럽연합 역내시장에서 각 회사는 유리한 기업환경을 보장하는 회원국을 본거지로 삼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동기(incentive)를 갖게 되었다. 지속적인 유럽연합의 통합으로 인한 시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럽연합의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경쟁법을 포함한 회사법의 조화가 필요하였으며, 계속적으로 회사법통일을 위한 입법이 진행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유럽 역내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이한 각 회원국의 회사법규정을 조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는 회사설립에 관하여, 회사설립의 자유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유럽경제통합의 촉진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하였다. 특히 회원국 간의 상이한 회사설립절차 내지는 규제를 어느 정도 통일화함으로써 유럽연합 역내에서 완전경쟁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설립의 자유보장으로 인한 유럽에서의 ‘델라웨어 효과(Delaware effect)’⁴⁹⁾를 발생시키는 하향경쟁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⁰⁾

사업자들에게 친기업적 환경을 제공하는 입법의 경쟁인 하향경쟁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활동중심지원칙(혹은 실제장소원칙: real seat, Sitztheorie, 또는 siegè réel doctrine)는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회원국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회원국 법원이 법률형식상이 아닌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회사가 설립된 회원국의 법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 당해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회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반면, 영국, 아일랜드,

46) 유럽연합은 경쟁조항(TFEU 제101~102조)을 통해 유럽연합 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고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47) 혹자는 TFEU 제49조와 56조의 차이는 거의 없으므로, 두 조항의 구별은 인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Stephen Weatherill,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9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0, p.425].

48) Paul Craig and Grainne De Burca, op. cit., p.771.

49) 미국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은 회사설립에 있어 다른 주보다 유리하게 규정되어 많은 회사들이 델라웨어주로 이주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되자, 다른 주들도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을 완화시킨 현상을 말한다.

50) 앞의 책, 박덕영 외 14인 공저, 396~397쪽.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국 규정(state of incorporation rule)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는 회사가 설립되거나 등록된 회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기업 활동을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원칙이다. 이런 상이한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인하여 설립의 자유의 원칙과 회사법의 통일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⁵¹⁾

따라서 유럽주식회사규칙을 통하여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유럽연합 역내시장에서 통일적인 형태의 주식회사(SE)의 설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적 근거는 역시 TFEU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²⁾ TFEU 제50조 제2항은 유럽연합에서의 입법 기관인 유럽의회, 유럽위원회, 이사회(Council)가 회원국 및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회사법의 통합 혹은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⁵³⁾ TFEU 제50조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의 자문을 거쳐 역내 기업활동의 자유의 제한을 제거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제g호는 각 회원국 회사법규정을 조정하여 투자자 및 제3자를 위한 입법을 통해서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⁵⁴⁾ 결론적으로, 각 회원국의 회사법 제에 의하여 소수주주와 채권자에 부여된 보호의 정도가 다르며, 이러한 상이한 법률이 역내시장에서 설립의 자유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법통일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주식회사규칙을 제정

51) Catherine Barnard, *op. cit.*, pp.331~332.

52) 유럽주식회사규칙은 TFEU 제352조에 의한 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유럽자본시장이 점차 세계화됨에 따라 기업회계의 투명성 및 국제적 적합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공개회사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위한 규칙이 2002년에 입법되었으며, 동 규칙은 당해 기준의 변화에 따라 매년 개정된다[앞의 책, 박덕영 외 14인 공저, 413쪽].

53) 이에 대한 견해는 Daily Mail 사건에 대한 평가 이후에 이루어졌다[Catherine Barnard, *op. cit.*, p.320].

54) 특히 유럽연합 이사회에게 상당한 입법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TFEU 제352조는 회사법의 조화의 수단으로서 중요하다. 또한 규칙의 효력은 TFEU 제288조 제2문에 의해 일반적 효력으로 인정되며, 회원국 내에서 수정없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규칙은 지침과는 달리 회원국의 입법부가 이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회원국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도 직접 적용됨이 원칙이다 [앞의 책, 박덕영 외 14인 공저, 412쪽; Alan Dashwood et al., *op. cit.*, p.678 참조].

하였고, 일련의 회사법 지침 및 규칙의 입법은 위 TFEU 조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⁵⁵⁾

Ⅲ. 유럽회사법에 대한 평가

1. 유럽주식회사규칙 일반

유럽조약의 발전과 더불어 유럽연합을 통한 많은 분야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회사법과 관련하여 이사회(Council)는 1968년 이후 회사법에 관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또한 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침을 통해서 각 회원국 간의 회사법이 어느 정도 통일을 이루기는 하였으나,⁵⁶⁾ 그 기준이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회사법과 같은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회사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통일적인 형태를 가진 유럽주식회사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⁵⁷⁾ 실제 회원국 간 상이한 법체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법의 통일화에 대한 필요성이 위에서 기술한 판례를 통해 인식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 차원의 회사법은 안정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완성된 모습의 유럽 단일시장을 위한 도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⁵⁸⁾

본 규칙은 기본적으로 상이한 회사법으로 인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원국들의 회사법 내용을 비교하고 종합하여 정리된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보다 통합된 형태의 회사

55) 위의 책, 박덕영 외 14인 공저, 401쪽. 회사법지침의 내용과 관련하여, [PSRF Mathijsen, A Guide to European Union Law, 10th edn, Sweet & Maxwell, London, 2010, pp.278-282; Koen Lenaerts and Piet van Nuffel, European Union Law, 3rd edn, Sweet & Maxwell, London, 2011, pp.260-263]등을 참조.

56) 유럽주식회사법 제정의 역사적 발전과 관련하여, [앞의 논문, 김은경, “EU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88쪽] 참고.

57)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OJ L 294/1.

58) 임정숙, “유럽주식회사의 법원에 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24권 제4호, 2010, 92쪽.

법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현대 회사법의 거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주식회사규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⁹⁾ 무엇보다 최근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폐쇄책임유한회사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입법 논의는 현재의 유럽주식회사법규칙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유럽주식회사규칙안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차례 유럽주식회사법안이 제출되었으나, 각 회원국의 입장차이로 이사회는 표결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유럽역내시장 달성을 위한 통일된 모습의 유럽주식회사법의 중요성이 다시 나타났고, 당시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규칙안을 1989년에 제안하였다. 또한 이사회는 이와 더불어 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한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결국, 유럽회사에 있어서 유럽주식회사규칙안과 노동자의 참여에 관한 지침안으로 분리되었다.⁶⁰⁾ 이후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부터의 자문과 제안을 고려하여 입법안을 수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유럽주식회사규칙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의 문제는 직접 다루지 않으며, 관련 지침을 통해 회원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또한 유럽주식회사규칙에 포함되지 않거나 통일된 규정이 없을 시에는 회사법상의 관련 문제들은 회원국의 관련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도록 하고 있다.⁶¹⁾

현재 여러 회사법관련 지침에 의해 회원국들의 회사 관련 법규들이 어느 정도 통일화되어 있으나, 개별 회원국 법규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다른 회원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데에는 여전히 장애가 많다. 따라서 유럽주식회사(SE)를 통하여 유럽연합 차원에서 회원국 법규의 제약을 어느

59) 김동훈, 『회사법』,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10~11쪽.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각각 회사의 설립,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회사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유럽경제이익단체(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 EEIG)와 2004년부터 설립된 유럽주식회사(SE)를 제외하고 각각의 회원국의 관련 회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EEIG는 현재까지 종종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Erwin R. Roelofs, “Cross-Border Division of SEs”, *European Company Law*, Vol. 7 No. 4, 2010, p.142].

60) Philippe Pellé, “Companies Crossing Borders within Europe”, *European Company Law*, Vol. 5, No. 6, 2008, p.285.

61) 앞의 책, 박덕영 외 14인 공저, 414~415쪽; 앞의 논문, 김은경, “EU에서 합병에 의한 유럽주식회사의 형성과 이해관계자의 보호”, 205~206쪽.

정도 피하면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유럽주식회사규칙을 통한 회사설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 역내 시장의 기업들에게 국제적 기업합병을 통해 국경초월적 구조변경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국제적 콘체른이 공동자회사나 지주회사의 설립을 할 때 위 규칙은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내에서 본점 이전의 자유를 가능하게하고, 동시에 다국적 기업의 통일적 관리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기업운영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셋째, 위 규칙은 이미 통일화된 회사법 규정과 관련된 독립적인 법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회원국 국내법의 회사형태와 병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 지배구조의 선택권을 제공한다.⁶²⁾ 무엇보다, 유럽연합은 유럽주식회사규칙의 입법을 통해서 법적 구속력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회원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국에 단일한 회사법규범을 제공하고, 동시에 기업에게는 준거법의 선택을 보장하였다. 그러므로 지침을 통한 법의 통일 방식과는 상이하게, 회원국 사이에 통일된 회사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럽주식회사규칙이 유럽연합에서 회사법 통일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사법과 관련하여 법규범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각 회원국 사이에서 상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분야의 제도를 법규화하고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도록 유럽연합 차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하였으며, 이는 입법 후 지난 10년 동안 유럽주식회사법을 통한 경험이 다른 분야에 있어서 입법할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⁶³⁾ 따라서 회사법의 점진적인 통일을 통해서 유럽법에서 다른 사법 분야의 통일까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주식회사규칙의 가장 특징이자 강점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해서 독일식의 이원적 지배구조(two-tier system)⁶⁴⁾와 영국식의 일원적 지배구조

62) 위의 책, 박덕영 외 14인 공저, 415~416쪽.

63) 앞의 논문, 김은경, “EU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88쪽.

64) 유럽주식회사규칙 제39조~제42조.

(one-tier system)⁶⁵⁾ 형태 중에서 기업이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⁶⁶⁾ 만약 영국식의 회사형태에 익숙한 기업이 유럽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원적 지배구조를 선택하는 경우, 이원적 지배구조에 익숙한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낯선 사례가 된다.⁶⁷⁾ 예를 들어, 독일에 설립된 유럽주식회사가 감독기관을 회피하기 위해 독일법 체계에 낯선 일원적 지배구조를 채택함으로써 공동결정회사 범위에 벗어날 수도 있다.⁶⁸⁾ 유럽주식회사가 하나의 회사형태에 두 개의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회사 소재지를 회원국 중 재량에 따라 선호하는 지배구조를 선택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구조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⁶⁹⁾

그러나 이러한 유럽주식회사규칙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다. 유럽주식회사는 공개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데, 특히 최저 설립자본(12만 유로)에 대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유럽주식회사가 유럽기업으로서 적절한 규모를 가지고, 그 설립의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은 유럽주식회사규칙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통일화를 이루었지만, 완벽한 하나의 법체계인 유럽주식회사를 만들지는 못하였다. 각 회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이한 법체계를 인정하는 타협의 방식을 통해 위와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주식회사로 등록하게 되면 재량에 따라 그 지배구조 및 형태를 선택하고 유동성 있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할 것이다.⁷⁰⁾ 이를 통해 유럽주식회사이지만 회사가 등록된 회원국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65) 유럽주식회사규칙 제43조~제45조.

66)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지배구조는 일원적 지배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대기업을 경우 이원적 지배구조를 선호하기도 한다[Klaus J. Hopt,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The State of the Art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59, 2011, pp.21-23].

67) 앞의 논문, 김은경, "EU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89쪽.

68) 김성호, "유럽 주식회사(SE)의 회사법적 구조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제18집, 제3호, 2008, 26쪽.

69) 앞의 논문, 임정숙, "유럽주식회사(SE)의 내부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44쪽.

70) 앞의 논문, 임정숙, "유럽주식회사의 법원에 대한 고찰", 92~93쪽.

2. 준거법 경쟁을 통한 유럽회사법의 발전

실제적으로 모든 기업에게 외국에서의 회사설립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국경을 초월한 사업 활동에서 당사국의 해당 관련 규정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장애물과⁷¹⁾ 상이한 법체계로 인한 실질적으로 엄격한 설립규정, 그리고 국내법의 해외 회사설립의 규제 등이 이에 속한다 할 것이다.⁷²⁾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역내시장에서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회사법 통일의 목적은 이러한 설립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며, 이는 역내시장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사업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국경 간 사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을 제거하거나 다른 회원국에서 설립과 관련하여 당해 회원국보다 더 엄격하게 시행되는 국내법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초국가적 유럽주식회사의 설립이라는 이념 뒤에는 기업이 당해 사업을 유럽연합 내에서 재구축할 수 있다는 이념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⁷³⁾ 특히 기업들이 회사지배구조를 회원국 국내법 차원으로 형성할 수 있었으나 이제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 체계로 자유롭게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⁷⁴⁾

그러나 유럽주식회사규칙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회사법의 통일이 과연 이론적으로나 실제로 역내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럽회사법의 통일이 유럽시장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회사법의 현대화 및 기업지배구조의 증진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한 평가 내용이 될 수 있다.⁷⁵⁾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입법의 목적과 효과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71) 각 회원국 간의 상이한 국내법, 법적 효과 등과 관련된 심리적 장애를 해결하고자 유럽주식회사규칙이 제정되었다[정성숙,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에 관한 연구: 설립방법과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2007, 114쪽].

72) Alan Dashwood et al., op. cit., p.679.

73) Valentine N.J. Snijder and Adriaan Doresteijn, “Oil Disaster Spills Over BP Europa SE”, European Company Law, Vol. 8, No. 1, 2011, p.23.

74) 앞의 논문, 임정숙, “유럽주식회사(SE)의 내부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76쪽.

75) Alan Dashwood et al., op. cit., p.677.

판례에서는 입법의 목적이 회원국 간 사업 활동에 제한을 주는 요인을 제거하고 동시에 경쟁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⁷⁶⁾ 유럽연합의 입법은 국경을 초월한 사업 활동에서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유럽시장에서 전체적인 경쟁적 환경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유럽조약(TEU) 제3조 제3항을 근거로 유럽연합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쟁적인 사회적 시장경제(highly competitive social market economy)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⁷⁷⁾

무엇보다 당해 기업이 각 회원국, 예를 들어 이탈리아, 프랑스, 혹은 독일회사가 아닌 유럽회사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다만 느슨한 유럽주식회사법의 통일로 인하여 이러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 이유는 관련 규칙이 설립하는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인식되며 결국 여러 종류의 유럽회사가 어느 회원국에서 설립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⁸⁾

유럽회사에 대한 평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질문은 과연 유럽회사의 형태가 상당한 수의 유럽주식회사등록을 가능하게 할 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쉽게 답변을 내릴 수는 없지만, 각 회원국 회사법과의 경쟁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법규범의 우수성 혹은 준거법으로의 채택을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⁷⁹⁾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주식회사규칙의 설정은 전형적인 규제간의 경쟁(regulatory competition)이라 할 것이며, 이는 회원국 국내법 간의 경쟁이 존재하는 동시에 회원국 국내법과 유럽연합법 사이의 경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⁸⁰⁾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는 Centros 판결이후 2009-2010년 대폭 회사법을 개정하여 유럽회사들이 덴마

76) Case C-376/98 Germany v Council and Parliament [2000] ECR I-8419.

77) Alan Dashwood et al., op. cit., p.678.

78) “A Modern Regulatory Framework for Company Law in Europe”, p.38. EU 웹사이트 참조: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mpany/docs/modern/consult_en.pdf.

79) 최병규, “유럽주식회사에 관한 연구”, 유럽법학, 제4호, 2008, 92쪽.

80) Alan Dashwood et al., op. cit., p.692. 그러나 회원국은 유럽주식회사와 회원국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와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Luca Cerioni, “EU Corporate Law and EU Company Tax Law”, Edward Elgar,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MA USA, 2007, p.99].

크 회사법을 준거법으로 사용하여 덴마크에서의 회사설립을 유도하기도 하였다.⁸¹⁾ 따라서 각 회원국 회사지배구조 간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각 회원국들은 자국으로의 자본의 이동을 고려하여 더 발전된 지배구조 형태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각 회원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유럽연합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까지 높일 것이다.⁸²⁾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 설립된 유럽주식회사의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04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럽회사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⁸³⁾ 아직 유럽주식회사의 설립 숫자가 백단위이지만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⁸⁴⁾ 그 이유는, 기업이 이사회에서의 의무적인 공동결정(mandatory co-determination)을 부과하는 회원국 국내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주식회사법으로의 등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원적 혹은 이원적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그 주요 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설립비용 즉 최저 설립자본의 문제는 유럽주식회사설립 증가에 여전히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⁸⁵⁾ 최근 통계를 통한 연구에 의하면, 회사설립과 관련한 비용과 최저 설립자본에서 차이가 약간이라도 존재한다면 실제 기업이 회사를 설립하는 회원국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⁸⁶⁾ 또한 최근에는 유럽주식회사를 설립하고

81) 이를 미국 ‘텔라웨어효과’와 비슷한 이름으로 ‘코펜하겐효과’라 부르기도 한다[Erik Werlauff, “A ‘Copenhagen Effect’?: Denmark’s Answer to Centros: A Far-Reaching Company Law Reform Aimed at Strengthening the ‘Free Movement of Companies’”, *European Company Law*, Vol. 6, No. 4, 2009, p.160].

82) 앞의 논문, 임정숙, “유럽주식회사(SE)의 내부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77쪽.

83) 유럽주식회사로의 전환의 최근 예로는 British Petroleum 사례를 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의 자회사를 합병하여 독일 함부르크에 유럽주식회사로 등록하였으며, 앞으로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자회사도 통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주회사가 아닌 여러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회사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Valentine N.J. Snijder and Adriaan Doresteijn, *op. cit.*, p.23] 참고.

84) 2010년 9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총 622개의 회사가 등록을 했으나, 157개의 회사만이 집행과 고용을 동시에 하고 있다[Valentine N.J. Snijder and Adriaan Doresteijn, *op. cit.*, p.24].

85) Horst Eidenmüller et al, “How Does the Market React to the Societas Europaea?”,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Vol. 11, 2010, pp.35-49. Eidenmüller의 논점과 관련하여, [Alan Dashwood et al., *op. cit.*, pp.692-693] 참조.

86) Katja F. Mtewebana, “The Regulation of Companies’ Capital in the European Union: What i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European Business Law Review*, Vol. 22, 2011,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관련한 비용, 복잡성,⁸⁷⁾ 그리고 불확실성에 관한 요인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유럽주식회사, ‘SE’라는 형태에 대해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등록사무소와 활동중심지(real seat)를 근거로 한 규정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⁸⁸⁾ 따라서 비용 및 복잡성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문제점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⁸⁹⁾

3. 유럽회사법의 발전에 대한 전망:

최근 폐쇄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미국회사법은 일반적으로 주주의 보호의 중점과 경영구조와 관련하여 이사회 일원적 지배구조를 취한다. 반면 유럽연합은 회사의 소수주주와 채권자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기업이익을 고려하며, 이사회 이외에 감사기관 제도(이원적 지배구조의 경우)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에서는 개척자 정신, 개인주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강조되지만, 유럽연합에서는 사회연대사상이 강하기 때문이다.⁹⁰⁾ 사회연대사상을 근거로, 최근 유럽 내 초국가적인 폐쇄유한책임회사(SPE)⁹¹⁾와 관련된 입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⁹²⁾ 특히 기존의 유럽주식회사(SE)는 중소기업에게는 적

p.251.

87) 실제 자유로운 지배구조의 선택으로 인해 현재 27개의 회원국에서 54개의 지배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회원국들의 지배구조들이 같은 이원적 혹은 일원적 지배구조라 할지라도 각국의 제도는 자국만의 독특함을 보유하고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앞의 논문, 임정숙, “유럽주식회사(SE)의 내부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77쪽].

88) Valentine N.J. Snijder and Adriaan Doresteijn, op. cit., p.25.

89) 유럽위원회는 2011년 Work Programme을 통해 2012년에는 SE설립 및 등록지 이전에 관련한 규정을 보다 간단하게 하는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John Armour and Wolf-Georg Ringe, op. cit., p.161].

90) 앞의 책, 박덕영 외 14인 공저, 397쪽.

91) 폐쇄유한책임회사는 주로 지분구조가 폐쇄적인 법인으로서 각 구성원이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는 자본단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앞의 논문, 노혁준, 144쪽].

92) 최근 입법논의가 되고 있는 폐쇄유한책임회사규칙에서 기존의 유럽주식회사규칙의 내용과는 상이하게 이사의 책임과 주주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기술되어 있다. 관련하여, [Adriaan F.M. Dorresteijn and Odeaya Uziah-Santcroos, “The Societas Privata Europaea under the Magnifying Glass (Part I)”, European Company Law Review, Vol. 5,

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한 새로운 입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은 유럽경제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에서 99%가 중소기업에 속하고 전체 고용의 2/3가 중소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할 것이다.⁹³⁾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다른 회원국에서 중소기업이 손쉽게 자회사를 설립하고, 국경을 초월한 기업인수합병을 간편하게 하는 동시에,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⁹⁴⁾ 특히 최저 설립자본에 있어서 기존의 유럽주식회사보다 훨씬 느슨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설립의 인센티브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폐쇄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칙안은 기존의 유럽주식회사규칙보다 좀 더 진보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칙안이 회사의 규모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없으므로 대기업이 본 법안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 법안의 내용은 특히 중소기업에 맞추어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⁹⁵⁾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유럽연합에서는 폐쇄유한책임회사 법제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주식회사를 통한 공개유한회사에 대한 통일과 더불어 폐쇄회사에 대해서도 규정의 통일로 유럽경제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움직임이라 평가할 수 있다.⁹⁶⁾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폐쇄유한책임회사의 규칙안의 가장 큰 특징은 최저 설립자본이 1유로로서,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실제 규칙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최저 설립자본은 1만 유로로 설정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위의 1유로 최저 설립자본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정관에서 이사회가 지불능력증명서에 서명할 경우에만 이것이 가능하게 하였는데,⁹⁷⁾ 이러한 내용은 어느 정도의 절충안이라 할 수 있

No. 6, 2008, p.280] 참조.

93) Ibid., p.277.

94) SE규칙은 설립단계에서 SPE규칙안과 달리 단독으로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SE규칙은 등록사무소와 영업사무소가 동일한 회원국에 속할 것을 요구하지만 SPE규칙안은 요구하지 않는다. 관련하여, [앞의 논문, 노혁준, 158쪽] 참조.

95) Adriaan F.M. Dorresteyn and Odeaya Uziahu-Santcroos, (Part I), op. cit., p.277.

96) 앞의 논문, 노혁준, 141쪽.

다.⁹⁸⁾ 현 유럽주식회사규칙에서의 최저 설립자본인 12만 유로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액수이며 따라서 부담이 된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⁹⁹⁾ 이는 몇몇 회원국 회사법에서 최저 설립자본의 금액을 줄이는 것과는 관계가 있다.¹⁰⁰⁾

IV. 결 론

일원적 혹은 이원적 지배구조의 선택을 허용하며, 이러한 선택을 추후 정관변경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유연적인 특징이 유럽주식회사규칙의 가장 큰 장점이다.¹⁰¹⁾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이 여러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공통된 국내 규범 및 강제 규범을 조사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통일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완성된 모습의 유럽연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에서의 회사법분야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통일화의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고 실제적인 모습을 점차 갖추어가고 있으므로, 이를 연구하고 우리나라 회사법과 비교하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¹⁰²⁾

최근 British Petroleum(BP)을 포함하여 Allianz와 Porsche도 유럽주식회사로 등록하였다. 그 목적은 법적 실체의 수를 줄여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고 사업의 효율적 구조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특히, BP의 경우 유럽회사로의 등록을 통해 법적구조, 지배구조 및 내부 자본과 세금의 대한 절차

97) 그러한 요건이 정관에 없을 시에는 최저 자본금은 8천유로가 되어야 한다.

98) Adriaan F.M. Dorresteyn and Odeaya Uziahu-Santcroos, "The Societas Privata Europaea under the Magnifying Glass (Part II)", *European Company Law*, Vol. 6, No. 4, 2009, p.152.

99) 따라서 폐쇄유한책임회사는 유럽주식회사로 전환이 불가능하며 특히 지배구조가 적합하지 않다[Philippe Pellé, *op. cit.*, p.285].

100) Erik Werlauff, "A 'Copenhagen Effect'?", *op. cit.*, p.162. 덴마크에서는 보다 경쟁적으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최저 설립자본금액을 현저하게 낮추는 회사법(private company law) 개정이 있었다.

101) 앞의 논문, 김은경, "EU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95쪽.

102) 위의 논문, 김은경, 96쪽.

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그 전환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주식회사는 해산없이 등록사무소를 다른 회원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¹⁰³⁾ 일원적 지배구조 혹은 이원적 지배구조의 선택을 보장하는 회원국은 많지 않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현재의 유럽주식회사규칙이 특정 회원국의 국내 회사법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개별적 사례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주식회사는 유럽의 정체성(European identity)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것이 앞에서 기술한 회사뿐만 아니라 SCOR Global Life SE(프랑스), BASF SE(독일), Bauholding Strabag SE(오스트리아), Equens SE와 Catalis SE(네덜란드)등이 유럽주식회사의 형태를 채택한 이유라 할 것이다.¹⁰⁴⁾ 유럽연합 기업들에게 유럽주식회사규칙 이전에는 많은 선택이 주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입법을 통한 회사법의 통일을 근거로 이제 유럽연합 역내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게 된 것이다.¹⁰⁵⁾

유럽주식회사의 증가, 특히 한-EU FTA 이후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유럽의 다국적 기업이 유럽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경우, 유럽주식회사의 한국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예정인 우리나라 기업에게 유럽주식회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논의하는 학자들이 있다.¹⁰⁶⁾ 우리나라는 아직 유럽에서 관찰할 수 있는 외국 회사법과의 준거법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국제무역증가와 더불어 FTA 확산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회사법과 외국법과의 법제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법제를 합리화하고 유럽연합에서의 법제통합과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¹⁰⁷⁾

103) 그 예로 Elcoteq SE와 Betbull Holding SE의 사례가 있다.

104) Valentine N.J. Snijder and Adriaan Doresteijn, op. cit., p.25.

105) 회사법 선택의 증진과 관련하여 [Horst Eidenmüller et al, op. cit., pp.48-49] 참조.

106) 그러나 현재 유럽주식회사규칙이 유럽주식회사의 설립주체로서 유럽연합 구성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지법인의 설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유럽주식회사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앞의 논문, 김성호, 36쪽; 앞의 논문, 정성숙, 138쪽].

마지막으로 법인, 유한책임, 전환가능한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자본주의의 독창적인 발명 중 하나이다. 회사는 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우리 사회에 자본을 할당하고 효율적으로 자본을 이용하는 주요한 도구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식회사는 경제적 효율성의 매개체라 평가할 수 있다.¹⁰⁸⁾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효율성과 관련이 깊으면서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기업의 매수.매도와 관련한 투자전략이 발생한다.¹⁰⁹⁾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을 하나의 유럽합중국으로 만들기 위한 유럽법의 거시적인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발달과 함께 회사법의 발전이 유럽연합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¹⁰⁾ 이제 유럽에서는 효율적이고 친 기업환경의 회사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폐쇄유한책임회사(SPE)규칙 제정을 통해서 회사설립선택의 범위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회사법의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벨라웨어효과와 같은 각 주의 회사법간 하향경쟁은 결과적으로 회사법의 내용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논의가 있다.¹¹¹⁾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회사법의 선택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유럽주식회사규칙을 기본으로 폐쇄유한책임회사규칙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회사법이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인지 예상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107) 앞의 논문, 노혁준, 171쪽.

108) Beate Sjaafjell, “If Not Now, Then When?: European Company Law in a Sustainability Development Perspective”, *European Company Law* Vol. 7, No. 5, 2010, p.187.

109) 최완진, 「기업지배구조법 강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1, 5쪽.

110) 앞의 논문, 김은경, “EU에서 합병에 의한 유럽주식회사의 형성과 이해관계자의 보호”, 221쪽.

111) Horst Eidenmüller et al, *op. cit.*, p.39.

참 고 문 헌

1. 국문헌

- 김동훈, 『회사법』,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 김봉철, 『FTA-자유무역협정의 법적이해』, 한국기업법무협회, 2007.
- 김성호, “유럽 주식회사(SE)의 회사법적 구조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제18집, 제3호, 2008.
- 김은경, “EU에서 합병에 의한 유럽주식회사의 형성과 이해관계자의 보호”, 기업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7.
- 김은경, “EU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기업법연구, 제23권 제4호, 2009.
- 권영애, “유럽주식회사(SE, Societas Europaea)의 설립과 경영체계: EU령의 독일 주식법과의 접목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4권 제1호, 2010.
- 노혁준, “유럽의 폐쇄회사 법제 논의: EU 법안과 영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9권 제4호, 2011.
- 박덕영 외 14인 공저, 『EU법 강의』, 박영사, 2010.
- 임정숙, “유럽주식회사의 법원에 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24권 제4호, 2010.
- 임정숙, “유럽주식회사(SE)의 내부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독일이원구조SE의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5권 제1호, 2011.
- 정성숙,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에 관한 연구: 설립방법과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2007.
- 채형복, 『리스본 조약』,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0.
- 채형복, 『핵심 유럽연합(EU)법』,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1.
- 최병규, “유럽주식회사에 관한 연구”, 유럽법학, 제4호, 2008년
- 최완진, 『기업지배구조법 강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1.

2. 영문문헌

- Armour, John and Wolf-Georg Ringe, “European Company Law 1999-2010: Renaissance and Crisis”, *Common Market Law Review*, Vol. 48, 2011.
- Barnard, Catherine, “The Substantive Law of the EU: The Four Freedoms”, 3rd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0.
- Cerioni, Luca, “EU Corporate Law and EU Company Tax Law”, Edward Elgar,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MA USA, 2007.
- Craig, Paul and Grainne De Burca, “EU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5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1.
- Dashwood, Alan, et al., “Wyatt and Dashwood's European Union Law”, 6th edn, Hart Publishing, Oxford and Portland, OR, USA, 2011.
- Davies, Norman, “Europe: A History”, Pimlico, London, 1997.
- Dorresteijn, Adriaan F.M. and Odeaya Uziahu-Santcroos, “The Societas Privata Europaea under the Magnifying Glass (Part I)”, *European Company Law Review*, Vol. 5, No. 6, 2008.
- Dorresteijn, Adriaan F.M. and Odeaya Uziahu-Santcroos, “The Societas Privata Europaea under the Magnifying Glass (Part II)”, *European Company Law Review*, Vol. 6, No. 4, 2009.
- Eidenmüller, Horst et al, “How Does the Market React to the Societas Europaea?”,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Vol. 11, 2010.
- Foster, Nigel, “EU Law Directions”, 2nd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0.
- Gerner-Beuerle, Carsten and Michael Schillig, “The Mysteries of Freedom of Establishment After Cartesio”,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59, 2010.
- Hartley, TC, “The Foundations of European Union Law”, 7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0.
- Hopt, Klaus J.,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The State of the Art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59, 2011.

- Jones, Alison and Brenda Sufrin, "EU Competition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4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0.
- Lenaerts, Koen and Piet van Nuffel, European Union Law, 3rd edn, Sweet & Maxwell, London, 2011.
- Mathijssen, PSRF, A Guide to European Union Law, 10th edn, Sweet & Maxwell, London, 2010.
- Mtwebana, Katja F., "The Regulation of Companies' Capital in the European Union: What i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European Business Law Review, Vol. 22, 2011.
- Nugent, Neill,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e European Union", 7th edn, Palgrave, MacMillan, New York, 2010.
- O'Leary, Siofra, "Free Movement of Persons and Services", in Paul Craig and Crainne De Burca (eds), The Evolution of EU Law, 2nd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1
- Pelkmans, Jacques, "European Integration: Methods and Economic Analysis", 2nd edn, Prentice Hall, Essex, UK, 2001.
- Pellé, Philippe, "Companies Crossing Borders within Europe", European Company Law, Vol. 5, No. 6, 2008.
- Roelofs, Erwin R., "Cross-Border Division of SEs", European Company Law, Vol. 7 No. 4, 2010.
- Roth, Wulf-Henning, "From Centros to Ueberseering: Free Movement of Companies,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Community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52, 2003.
- Sjafjell, Beate, "If Not Now, Then When?: European Company Law in a Sustainability Development Perspective", European Company Law Vol. 7, No. 5, 2010.
- Snijder, Valentine N.J. and Adriaan Doresteijn, "Oil Disaster Spills Over BP Europa SE", European Company Law, Vol. 8, No. 1, 2011.
- Vossestein, Gert-Jan, "Cross-Border Transfer of Seat and Conversion of

Companies under the EC Treaty Provisions on Freedom of Establishment: Some Considerations on the Court of Justice's Cartesio Judgment”, European Company Law, Vol. 6, No. 3, 2009.

Weatherill, Stephen, “Cases and Materials on EU Law”, 9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0.

Werlauff, Erik, “A 'Copenhagen Effect'?: Denmark's Answer to Centros: A Far-Reaching Company Law Reform Aimed at Strengthening the 'Free Movement of Companies'”, European Company Law, Vol. 6, No. 4, 2009.

Werlauff, Erik, “Principles of European Company Law”, European Company Law, Vol. 7, No. 5, 2010.

3. 웹사이트

Brecht, M et al., “Where Do Firms Incorporate? Deregulation and the Cost of Entry”,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ECGI), Law Working Paper No. 70/2006 (2008) 14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906066.

외교통상부 FTA 웹사이트: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EU 웹사이트:

”A Modern Regulatory Framework for Company Law in Europe”: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mpany/docs/modern/consult_en.pdf.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mployment_and_social_policy/social_dialogue/126016_en.htm.

<국문초록>

유럽연합에서 회사법 통일의 노력은 리스본조약 이전부터 회사법과 관련한 규칙과 지침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럽연합 회사법의 법규범은 자체의 규칙을 통해 유럽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설정하였으며, 공개유한책임회사인 유럽주식회사와 더불어, 2008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폐쇄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럽주식회사법을 근거로 설립된 회사의 수가 증가되면서 발전된 형태의 회사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회사법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 기존의 유럽회사법에 관한 국내연구는 전반적인 유럽회사규칙 및 지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나,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원국 법률간 하향경쟁과 이를 통한 회원국의 입법에서의 변화, 그리고 유럽에서의 회사법연구에 대한 최근 논의에 대해서 다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조약을 통한 설립의 자유와 이를 통한 각 회원국의 법률 간 경쟁과 유럽주식회사규칙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유럽주식회사규칙의 내용을 평가한다.

주제어 : 유럽연합, 유럽회사법, 유럽주식회사, 유럽주식회사규칙, 일원적 지배구조, 이원적 지배구조, 하향경쟁

Current Development of Company Law in the European Union

Choi, Yo-Sop*

European Union (EU) law has been a complex but at the same time fascinating subject of study due to its dynamic evolution. In particular, the Lisbon Treaty which entered into force in December 2009 represents the culmination of a decade of attempts at Treaty reform and harmonisation in diverse sectors. Amongst the EU private law fields, company law harmonisation has been one of the hotly debated issues with regards to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in the internal market. Due to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provisions on company law, it seemed somewhat difficult to harmonise company law.

However, Council Regulation 2157/2001 was legislated in 2001 and now provides the basis for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or *Societas Europaea*: SE). The Statute is also supplemented by the Council Directive 2001/86 on the involvement of employees. The SE Statute is a legal measure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nternal market, and provides a choice for companies that wish to merge, create a joint subsidiary or convert a subsidiary into an SE. Through this option, the SE became a corporate form which is only available to existing companies incorporated in different Member States in the EU.

The important question on the meaning of the SE Statute is whether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SE make it an attractive option to ensure significant numbers of SE registration. In fact, the outcome that has been made through the SE Statute is an example of regulatory competition. The traditional regulatory competition in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has been the one between national statutes between Member States. However, this time is not a competition between Member States, which means that the Union has joined the area in

* Ph.D. in Law (The University of Glasgow). Researcher and Part-time Lectur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ompetition between legal orders and is now in competition with the systems of company law of the Member States.

A quite number of scholars expect that the number of SE will increase significantly. Of course, there is no evidence of regulatory competition that Korea faces currently. However, because of the increasing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and expansion of regional economic bloc,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xample of development of EU company law. Addition to the existing SE Statute, the EU Commission has also proposed a new corporate form, Societas Private Europaea (private limited liable company). All of this development in European company law will help firms make their best choice for company establishment. The Delaware-style development in the EU will foster the race to the bottom, thereby improving the contents of company law. To conclude,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uropean company law become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company law and harmonisation efforts in the EU.

Key Words : European Union, EU Company Law, Societas Europaea, SE Statute, One-tier System, Two-tier System, Race to the Bottom